

학점이월에 관한 운영세칙 신규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3조(이월학점의 신청)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성적을 본교 대학원 각 과정의 성적으로 이월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 후 첫 학기 수업일 수 1/4선 내에 이를 학사관리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	제3조(이월학점의 신청)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성적을 본교 대학원 각 과정의 성적으로 이월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 후 첫 학기 수업일 수 1/4선 내에 이를 학사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	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
제4조(이월학점의 인정절차) ① 학점이월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산을 통해 이월시키고자 하는 해당 교과목을 기입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거쳐 학사관리팀에 신청한다.	제4조(이월학점의 인정절차) ① 학점이월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산을 통해 이월시키고자 하는 해당 교과목을 기입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거쳐 학사팀에 신청한다.	